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2057
----------	-------------

제안연월일 : 2021년 4월 27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배점 및 평가 기준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수정함(안 [별 표 1], [별 표 2]).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자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7)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가. 정기에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정기에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4) (3)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7)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8) (8)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 운영능력 및 계획	(6)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는 ‘실적’ 만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 으로만 평가	(2)
6. 그 밖에 사항		2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1항 관련)

I.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1- 가,나,의 경우는 평가 세세부 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상한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상한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서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해야 한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단,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에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에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 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점)

- OCR센터, ETAX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6. 그 밖에 사항 (2점)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점)

-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II-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별 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1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계		100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업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 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6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개정안과 같음>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7)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

현행		개정안		수정안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18 (5)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18 (5)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18 (7)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7)		※ <현행과 같음>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7)		※ <개정안과 같음>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25 (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25 (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28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 ※ <현행과 같음>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 ※ <개정안과 같음>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9 (5)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7 (5)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7 (5)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4)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만으로도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 ※ <현행과 같음>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 ※ <개정안과 같음>	
	<신 설>		6. 기타 사항	2 (2)	6. 그 밖에 사항	2 (2)
			가. 탈석단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별 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1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I. 일반원칙</p> <p>1. (생 략)</p> <p>2. 평가 세부항목별(1- 가,나)의 경우는 평가 세세부 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상한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상한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외의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서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해야 한다.</p>	<p>I. 일반원칙</p> <p>1. (현행과 같음)</p> <p>2. 평가 세부항목별(1- 가,나)의 경우는 평가 세세부 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상한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상한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외의 협력사업), 평가항목 6(그 밖의 사항)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서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해야 한다.</p>	<p>I. 일반원칙</p> <p>1. (개정안과 같음)</p> <p>2. ----- ----- ----- ----- ----- ----- -----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외의 협력사업) ----- -----</p>
<p>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p> <p>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p> <p>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 략) ○ (생 략) <p>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 략)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흥, 농수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 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p>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p> <p>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p> <p>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p>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p>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p> <p>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p> <p>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 (개정안과 같음) <p>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개정안과 같음)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p>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p> <p>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p>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p>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p>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p>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p> <p>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p>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p>다. (현행과 같음)</p> <p>라. (현행과 같음)</p>	<p>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p> <p>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p>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p>다. (개정안과 같음)</p> <p>라. (개정안과 같음)</p>
<p>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점)</p> <p>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영업점망 및 시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p>※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p> <p>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p>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7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p>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점)</p> <p>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영업점망 및 시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p>※ (현행과 같음)</p> <p>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p>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7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p>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점)</p> <p>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 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p>※ (개정안과 같음)</p> <p>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p>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p>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p> <p>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p>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p>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p>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p>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p> <p>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p>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p>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p>라. (현행과 같음)</p>	<p>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점)</p> <p>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p>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p>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p>라. (개정안과 같음)</p>

<p>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점)</p> <p>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p>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4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p>※ II-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p>	<p>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p>※ II-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p>	<p>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p> <p>가. <개정안과 같음></p> <p>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p><삭제></p>
<p><신설></p>	<p>6. 기타 사항 (2점)</p> <p>가.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2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이 탈석탄 투자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p>※ 모든 금융기관이 탈석탄 투자 선언을 하고 완전히 이행한 경우 모두 만점처리</p>	<p>6. 그 밖에 사항 (2점)</p> <p>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p>※ II-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 1로 정하는 사항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1항 관련)

I.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1- 가,나,의 경우는 평가 세세부 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상한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상한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서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해야 한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단,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

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 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점)

- OCR센터, ETAX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6. 그 밖에 사항 (2점)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점)

-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II-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생략)</p> <p>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p> <p>1. ~ 5. (생략)</p> <p><u><신 설></u></p>	<p>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 1로 정하는 사항</u></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u>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1항 관련)</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평가항목</th> <th style="width: 50%;">평가 세부항목</th> <th style="width: 20%;">배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r>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top;">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u>30</u></td> </tr> <tr> <td>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6점) ※ (생략)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u></td> </tr> <tr> <td rowspan="4" style="vertical-align: top;">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td> <td>가. 정기예금 예치금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u>(6)</u></td> </tr> <tr> <td>나. 공금예금 적용금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u>(5)</u></td> </tr> <tr> <td>다. 자치단체 대출금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r> <td>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u>30</u>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6점) ※ (생략)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u>(20)</u>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u>(6)</u>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u>(5)</u>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u>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1항 관련)</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평가항목</th> <th style="width: 50%;">평가 세부항목</th> <th style="width: 20%;">배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r>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top;">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u>25</u></td> </tr> <tr> <td>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현행과 같음)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td> <td style="text-align: center;"><u>(17)</u></td> </tr> <tr> <td rowspan="4" style="vertical-align: top;">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td> <td>가. 정기예금 예치금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u>(7)</u></td> </tr> <tr> <td>나. 공금예금 적용금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u>(6)</u></td> </tr> <tr> <td>다. 자치단체 대출금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r> <td>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u>25</u>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현행과 같음)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u>(17)</u>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u>(7)</u>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u>(6)</u>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u>30</u>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6점) ※ (생략)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u>(20)</u>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u>(6)</u>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u>(5)</u>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u>25</u>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현행과 같음)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u>(17)</u>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u>(7)</u>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u>(6)</u>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생략)	18 (5)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생략)	(7)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생략)	(4)
<신 설>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현행과 같음)	18 (7)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현행과 같음)	(8)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현행과 같음)	(2)
6. 그 밖에 사항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 (2)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1항 관련)

I. 일반원칙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생략)	
○ (생략)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 (생략)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6점)	
※ (생략)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생략)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생략)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생략)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점)	
○ (생략)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5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시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1항 관련)

I. 일반원칙 (현행과 같음)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 (현행과 같음)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현행과 같음)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현행과 같음)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 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 (생 략)
 -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점)
 - (생 략)
 -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7점)
 - (생 략)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5점)
 - (생 략)
 -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 (생 략)
 -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점)
 - (생 략)
 -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점)
 - (생 략)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점)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생 략)
 -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4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 II-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신 설>

- ※ (현행과 같음)
 -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점)
 - (현행과 같음)
 -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점)
 - (현행과 같음)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점)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 (현행과 같음)
 -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현행과 같음)
 -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현행과 같음)
 - 라. (현행과 같음)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 가. (현행과 같음)
 -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 <삭제>

6. 그 밖에 사항 (2점)
-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점)
 -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II-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